

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2. 1.] [대통령령 제33004호, 2022. 11. 29., 타법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(에너지안전과) 044-203-3982

제11조(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)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자본금, 기술인력,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.

- 1.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
- 2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-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“자본금,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별표 3의 요건을 말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.

- 1.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
- 2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- 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.

- 1. 제5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
- 2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